

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6. 6. 23.>

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

총 계	19
정무직 계	4
부시장(차관급)	4
일반직 계	15
고위공무원단	15